

보스톤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계획 변경 관련 안내문

(보스톤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 2025. 3.)

- (공통)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R&D 업무포털-과제수행-(승인통보)협약 변경신청-과제조회 후 협약변경신청 버튼 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 연구계획변경은 IRIS에 당해연도 과제가 생성된 이후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승인성 협약변경 내용별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과제 변경/중단 신청서 파일 별도 등록 불필요**(온라인으로 관련 내용 입력 후 협약변경 신청 최종확인 버튼 클릭 시 신청서 파일 자동 생성)

| 변경내용(협약변경신청 세부항목) | 제출서류 |
|---|--|
| ▶ 연구과제 중단(조기종료 포함) ※ 변경신청 화면 내 변경항목 선택 > 수행포기 선택 및 필수입력 정보 입력 |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증빙서류(정당한 사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해당연도 연구비 집행내역 ※ 통합이지버로시스템 집행(예산실적)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 용도별 예산/집행액/집행진액이 확인 가능한 자체 서식으로도 제출가능 ④ 최종보고서 ⑤ (해당 시)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 사유서 |
| ▶ 연구과제명 변경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기본정보 탭 > 변경항목 선택 > 연구개발내용(과제명) 변경 |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 연구목표(내용)와 과제명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 각각 신청 ※ 변경사유 란에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4000bytes까지 입력 가능)하고,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자유 서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문서 첨부 |
| ▶ 연구목표(내용)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과제요약 탭 > 변경항목 선택 > 최종 목표 변경 | |
| ▶ 연구기간 변경 (육아휴직 등)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과제요약 탭 > 변경항목 선택 > 전체/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 ※ 연구기간 연장 시, 마지막 연차 연구기간을 연장 |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출산/육아휴직에 한해 증빙서류(출산증명서 또는 육아휴직 증명서 등) 제출 |
| ▶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연구(해외체류) ※ 안식년(연구년) 및 교환교수 파견 관련 비용은 연구 활동비(출장비)로 계상불가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연구기관 탭 > 변경항목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항목 선택 > 변경사유 선택(국내파견 등) |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국내·외 파견연구(해외체류) 신청서 ③ 증빙서류 - 초청편지 - 주관연구기관장 동의서 또는 인사발령 관련 공문 등 |
| ▶ 주관연구기관 변경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연구기관 탭 > 변경항목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구개발비 탭 내 '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 등록' 팝업창 작성 필수 |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변경 전/후 주관연구기관 동의서(포기서) ③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 ④ 증빙서류 - 기존 기관 퇴직증명서 - 이직할 기관 재직(예정)증명서 |
| ▶ 공동, 위탁연구기관 변경 ※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연구기관 탭 > 변경항목 선택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구개발비 탭 내 '사업비 이전 및 양도양수 등록' 팝업창 작성 필수 | 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 ② 변경 전/후 주관연구기관 동의서(포기서) ③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 ④ 증빙서류 - 기존 기관 퇴직증명서 - 이직할 기관 재직(예정)증명서 |

| 변경내용(협약변경신청 세부항목) | 제출서류 |
|---|---|
| <p>▶ 연구책임자 변경</p> <p>– 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이동, 담당 업무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p> <p>※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연구기관 탭 > 변경항목 선택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변경</p> | <p>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p> <p>② 변경 전/후 연구책임자 동의서(포기서)</p> <p>③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p> <p>④ 변경 전 연구책임자 관련서류 – 인사이동 증빙서류 등</p> <p>⑤ 변경 후 연구책임자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p> |
| <p>▶ 승인성 연구개발비 변경(시설장비심의)</p> <p>–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신규 구입/변경/취소</p> <p>※ 구입 후 반드시 ZEUS에 등록</p> <p>※ 1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ZEUS 심의 필요</p> <p>※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연구장비 탭 > 변경항목 선택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변경(3천만원 이상, 구축포기/변경 및 신규 도입)</p> <p>※ (필요시)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연구개발비 탭 > 변경항목 선택 > 연구시설장비비</p> | <p>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p> <p>②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p> <p>③ 장비 중복성검토 확인서</p> <p>④ 증빙서류 – 비교 견적서 – 제품 카탈로그</p> |
| <p>▶ 승인성 연구개발비 변경(시설장비심의 외)</p> <p>※ 변경신청 화면 내 필수입력 정보 입력 > 연구개발비 탭 > 변경항목 선택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선택</p> <p>※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에 한함*.</p> | <p>① 주관연구기관 발송 공문</p> |

※ 통보성 협약변경은 사업단 승인 없이 반영(단, 승인성 및 통보성 변경사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승인성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단 승인 전까지 통보성 변경도 보류됨)

※ IRIS 기능개선 등에 따라 메뉴 구성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의 연구과제 중단 신청**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등을 심의·확정

| 구분 | | 세부내용 |
|--------------|------------|--|
| 신분 변동 | 이직 |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 | 퇴직 |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
| | 공직 등 임명 |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
| 사망, 질병, 육아 등 | |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타 사업 선정 | |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 기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